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제2조 (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 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면제대상) “(현행과 같음)”</p> <p>1~5“(현행과 같음)”</p> <p>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제 1항중 “별표 제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종별요금표

업종별	월 기본요금		초과금액	
	수량	금액	1톤초과당	금액
1. 가정용	10톤까지	1,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톤~30톤 (1톤 초과당) • 31톤~50톤 (1톤 초과당) • 51톤 이상 (1톤 초과당) 	160원 190원 220원
2. 영업용 1종	20톤까지	4,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톤~50톤 (1톤 초과당) • 51톤~100톤 (1톤 초과당) • 101톤 이상 (1톤 초과당) 	300원 350원 420원
3. 영업용 2종	30톤까지	5,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톤~50톤 (1톤 초과당) • 51톤~100톤 (1톤 초과당) • 101톤 이상 (1톤 초과당) 	300원 340원 400원
4. 육탕용 1종	200톤까지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톤~300톤 (1톤 초과당) • 301톤~500톤 (1톤 초과당) • 501톤 이상 (1톤 초과당) 	300원 350원 400원
5. 육탕용 2종	200톤까지	4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톤~300톤 (1톤 초과당) • 301톤~500톤 (1톤 초과당) • 501톤 이상 (1톤 초과당) 	400원 500원 700원
6. 전용공업용	200톤까지	16,000원	• 1톤 초과당	120원
7. 공공용	30톤까지	4,000원	• 1톤 초과당	210원

업종별구분표

구분	업종	구분내용
1.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노인회관, 경노당,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 시설

구 분	업 종	구 분 내 용
2. 영 업 용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실소화전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 공연장 ○ 숙박업(여인숙 제외) ○ 유기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 사설학원 ○ 사진현상소 ○ 양조업 ○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적용)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3. 목 탕 용	1 종	○ 일반 목욕장업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4. 전 용 공 업 용		○ 별도의 배수관 또는 급수관에 의하여 원수로 공급되는 것
5. 공 공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병영 ○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원예농업협동조합, 기타 사회복지시설

신·구조문 대 비 표

(업 종 별 요 금 표)

현				개 정					
업 종 별	월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업 종 별	월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수 량	금 액	1톤 초과당	금액		수 량	금 액	1톤 초과당	금액
1. 가정 1종	10톤까지	750원	(1톤 초과당)	120원	1. 가정 용	10톤까지	1,100원	• 11톤~30톤 (1톤초과당)	160원
2. 가정 2종	10톤까지	1,100원	• 11톤~30톤 (1톤 초과당)	150원				• 31톤~50톤 (1톤초과당)	190원
			• 31톤~50톤 (1톤 초과당)	180원				• 51톤이상 (1톤초과당)	220원
3. 영업 1종	20톤까지	4,000원	• 21톤~50톤 (1톤 초과당)	220원	2. 영업 용 1	20톤까지	4,100원	• 21톤~50톤 (1톤 초과용)	300원
			• 51톤~100톤 (1톤 초과당)	300원				• 51톤~100톤 (1톤 초과용)	350원
4. 영업 2종	20톤까지	4,100원	• 101톤 이상 (1톤 초과당)	350원				• 101톤 이상 (1톤 초과당)	420원
			• 21톤~50톤 (1톤 초과당)	235원				3. 영업 용 2	30톤까지
5. 영업 3종	30톤까지	5,270원	• 51톤~100톤 (1톤 초과당)	340원	• 35톤~100톤 (1톤초과당)	340원			
			• 101톤이상 (1톤 초과당)	320원	• 101톤이상 (1톤초과당)	400원			
10. 임시 용	1 개 소	2,600원	1톤 초과당	600원	4. 욕 탕 용 2	200톤 까지	30,000원	• 201톤~300톤 (1톤초과당)	300원
6. 욕 탕 용 1 종	100톤 까지	16,000원	• 101톤~200톤 (1톤 초과당)	210원				• 301톤~500톤 (1톤초과당)	350원
			• 201톤~300톤 (1톤 초과당)	270원				• 501톤이상 (1톤초과당)	400원
7. 욕 탕 용 2 종	100톤 까지	24,800원	• 301톤 이상 (1톤 초과당)	360원	5. 욕 탕 용 2	200톤 까지	45,000원	• 201톤~300톤 (1톤초과당)	400원
			• 101톤~200톤 (1톤 초과당)	380원				• 301톤~500톤 (1톤초과당)	500원
• 201톤~300톤 (1톤 초과당)	490원	• 501톤이상 (1톤초과당)	700원	• 501톤이상 (1톤초과당)				700원	
8. 전용공업용	200톤까지	15,375원	1톤 초과당	96원	6. 전용공업용	200톤까지	16,000원	1톤 초과당	120원
9. 공공 용	30톤까지	4,000원	1톤 초과당	180원	7. 공공 용	30톤까지	4,000원	1톤 초과당	210원

신 · 구조문 대 비 표

(업 종 별 구 분 표)

현			개 정 안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1. 가정용	1 종	○공설및 사설공동수도(지방자치단체가 5세대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것) ○노인회관, 경노당, 양노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1.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지물, 철물등의 소매업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 ○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노인회관, 경노당,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2 종	○주민주거용 급수(탁아소 포함) ○단일업소로 담배가게, 복덕방, 만화가게, 쌀가게(잡곡상포함), 연탄가게, 관광안내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일반행정), 3평미만 구멍가게 및 기타 유사한 업소			
2. 영업용	1 종	○양조, 제분, 제당, 방직및 직물가공, 제빙, 기계, 전기전자제품제조, 유지, 청량음료제조, 주물및제철, 제지, 제과, 고무제품제조, 섬유공업, 제약(화공약품포함) 식료제품및가공(빙과류제품, 식육, 어육, 냉동, 통조림, 병조림, 인조버터, 조미식품) 염색및 표백요업, 한의원 ○기타 다른급수 업종에 속하지 않는업소	2. 영업용	1 종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시설소화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2 종	○ 공연장, 다과점, 정육점 금융업소, (보험회사, 신용금고, 시중은행, 예금취급소), 의원, 가족병원, 유기오락장(보링장, 골프장, 카바레, 당구장, 기원, 전자오락실, 무도장, 로라스케이트장및 스케이트장), 백화점, 시장(종합상가, 연쇄상가), 이미용업, 예식장, 세탁업, 인쇄소및출판사, 운송및관광업소, 창고및보관법, 주차장(화물주차장, 용달주차장포함) 학원, 사설강습소, 사진관, 차량정비업, 세차장, 검사장, 금은방, 제재소, 목재소, 주유소(산소및가스류포함), 여인숙, 하숙, 휴게실, 병원			
	3 종	○ 음식점(간이음식점포함), 다방, 호텔, 여관, (일반목욕장의 공동탕과 숙박시설을 겸한 업소중 일반목욕장의 공공탕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일반목욕장의 공동탕 요금사용에 한하여는 목욕1종을 적용한다), 칼라현상소, 두부 및 당면제조		2 종	○ 식품접객업 ○ 공연장 ○ 숙박업(여인숙제외) ○ 유기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또는관광업 ○ 예식장 ○ 사설학원 ○ 사진현상소 ○ 양조업
6. 임시용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6. 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건물용.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판매용 급수(기본요금제외) ○손실보상(기본요금제외) 	영업용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제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최종단계요금 적용)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풍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금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3. 욕탕용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 욕탕시설만 있는 목욕탕 ○풀장 및 수영장(비영리용제외) ○별도 독탕시설이 없는 욕탕으로 여관, 여인숙, 하숙 등 겸용시설업소 ○한증막(호텔내 한증막제외) 	3. 욕탕용	1 종	○일반목욕장업
	2 종	○대중탕 이외의 욕탕(독탕시설 보유업소), 터키탕, 가족탕, 싸우나탕(호텔내한증막)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 ○욕조및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구 분	업종	구 분 내 용
4. 전 용 공업용		○ 원수를 별도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것	4. 전 용 공업용		○ 별도의 배수관또는 급수관에 의하여 원수로 공급되는것
5. 공공용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 학교, 병원(국·공립) ○ 농협, 수협, 원예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대한접십자사 ○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 정당, 국책은행 ○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5. 공공용		○ 관공서, 병영 ○ 학교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출자 출연한 법인및 단체(생산·제조용수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및 지사무소, 원예농업협동조합, 기타 사회복지시설